

의안 번호	1340	【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5. 2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2.(금)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·지원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마. 협의회 설치·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)
- 바.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,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함으로써

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-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,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어,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